

[서식예 102]채권가압류신청서(임금채권으로 매매대금반환채권)

채권가압류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

금 10,000,000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20○○. ○. ○.부터 20○○. ○○. ○.까지의 임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2000. 0. 0. 채무자가 운영하는 00식당에 월 금 000만원의 임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위 일시부터 퇴사일인 2000. 00. 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위 기간동안의 임금 1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는 귀원에 임금청구의 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채권자는 귀원에 본안소송 제기의 준비를 하고 있으나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기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더라도 향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강제집행의 실행이 불가능하므로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매매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승소판결을 얻는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겠기에,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다만, 이 사건에 대한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00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 | | |
|------------|---------|
| 1. 소갑 제1호증 | 채불임금확인원 |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소명방법 | 1통 |
| 1. 가압류신청진술서 | 1통 |

- | | |
|-------------|----|
| 1. 부동산등기부등본 | 1통 |
| 1. 송달료납부서 | 1통 |

2000. 0. 0.

위 채권자 000 (서명 또는 날인)

00지방법원 귀중

[별 지 1]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10,000,000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아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반환채권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아 래 -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9층 아파트 제102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3층 308호

59.9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 대 11243.8㎡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1243.8분의 40.151. 끝.

[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채권자(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다 음 ◇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아니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예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할 것)

나. [유체동산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사건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할 것

다.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이외에 유체동산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할 것

기타 사유 → 내용 :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현재 진행상황(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은?

③소송결과(소송이 종료된 경우)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아니오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다. [“예”로 대답한 경우]

①동시 또는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현재 진행상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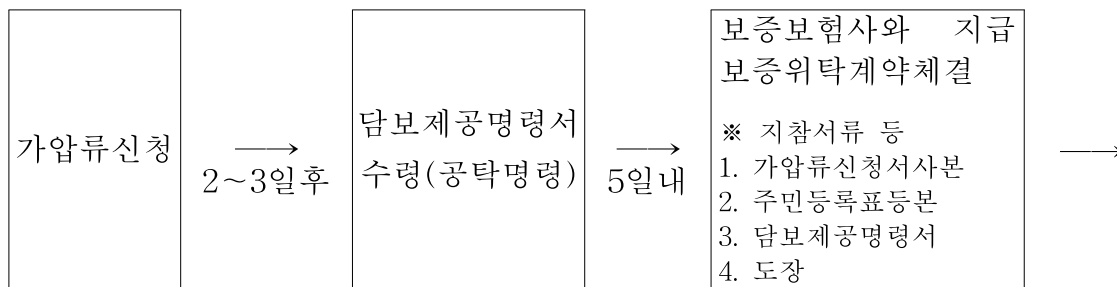
③ 신청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 유의사항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이 서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출법원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당사자목록, 청구채권목록, 가압류 채권목록 각4부정도 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8조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안의 제소 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 ·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용	· 인지액 : 〇〇〇원 (☞민사신청서첨부인지액표) · 송달료 : 〇〇〇원 (☞예납기준표)		
기타	·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할 것을 신청할 경우 인지액 500원 추가 · 2003. 11. 1.부터 접수되는 가압류신청 사건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별지로 제출해야 함.		

※ 집행절차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을 함께 제출)

※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부동산·자동차·채권에 한함)

1. 부동산, 자동차, 임금 또는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

2. 보증금액

○아래의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 참고

3. 가압류신청서상에 담보제공은 증권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
예)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 - ○○○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2003. 10. 20.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

구 분	부 동 산	채 권	유 체 동 산
담보제공액	청구금액의 1/10 ¹⁾	청구금액의 2/5 ²⁾	청구금액의 4/5 ³⁾
담보제공 방법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⁴⁾	○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⁴⁾ ○ 다만,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제공액의 1/2 범위 내의 현금공탁 (즉, 청구금액의 1/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 ⁵⁾)	담보제공액의 1/2(청구금액의 2/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 ⁵⁾
채권자별 구분 ⁶⁾	없음	없음	없음
선담보 ⁷⁾	가능	가능 (임금, 영업자 예금 제외)	불가능
기타 ⁸⁾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임금, 영업자 예금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도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 1) 변동 없음
- 2) 담보제공액 100% 증액(1/5 → 2/5)
- 3) 담보제공액 140% 증액(1/3 → 4/5)
- 4) 원칙적으로 현금공탁을 할 것인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을 채권자에게 맡김
- 5) 유체동산,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 담보제공액의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담보로 인정함
- 6)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구분을 없앴.
다만,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담보제공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현행과 같이 무공탁
- 7) 임금, 영업자 예금, 유체동산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같이 선담보제공 허용
- 8) 부동산가압류, 임금 및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가압류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로 현금공탁만을 허용

※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신청사건의사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재민 2003-4)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1. 1.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